

#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## (김해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27.

발의자 : 김해영 · 김민기 · 주승용  
서형수 · 서영교 · 김병관  
박찬대 · 위성곤 · 민홍철  
최운열 · 최인호 · 이학영  
권칠승 · 양승조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대부) ① (생 약)</p> <p>1. ~ 2. (생 약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8조(대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</u></p> <p><u>제2호에 해당하는 자</u></p>